

30. 칠레(Chile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	(사회보험) 18.84% / 없음 (개인계좌) 10% / 1.41%	(사회보험) 18.84% / 없음 (개인계좌) 11.25% / 1.53%	의무개인계좌 보험료율↑ (1.25% 관리운영비 부담)
보험료 부과 상한 소득/ 하한 소득	(사회보험) 60 UFs/270,000pesos (개인계좌) 75.7UFs/270,000pesos	(사회보험) 60 UFs/301,000pesos (개인계좌) 79.2UFs/301,000pesos	1UF ≙ 27,908.86 pesos
연금수급 개시 연령	(사회보험) 남성 65세, 여성 60세 (개인계좌) 남성 65세, 여성 60세	(사회보험) 남성 65세, 여성 60세 (개인계좌) 남성 65세, 여성 60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(사회보험) 가입기간 1,040주 (개인계좌) 가입기간 20년	(사회보험) 가입기간 1,040주 (개인계좌) 가입기간 20년	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24년(사회보험)
- **현행법** : 1952년(사회보험), 1952년(임금소득자), 1975년(사회부조), 1980년(개인계좌), 1980년(사회보험), 2008년(사회보장개혁)

2 제도형태

- **의무개인계좌, 사회보험, 사회부조, 보편적 (아동급여) 제도**

※ 2019년 신규법 내, 최저소득의 5배 이상에 상응하는 연 소득이 발생하는 특정 자영자의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제 도입됨. 2028년까지 자영자 가입자는 보험료 감액을 위해 일부 납부 선택 가능. 아래의 관련 조항은 자영자가 납부해야하는 포괄적 보험료를 개괄함

3 적용대상

- **사회보험**
 - **당연적용** : 법정 월 최저임금 3배 미만 상응하는 소득이 있는 임금소득자, 급여근로자 및 자영자로서 1983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제도 계속 적용을 선택한 자
 - ※ 법정 월 최저임금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 301,000 pesos(2019년 3월

- 기준); 18세 미만이나 65세 초과 가입자는 224,704 pesos(2019년 3월 기준)
- 특별제도 : 철도근로자, 선원, 항만근로자, 공공부문 근로자, 군인, 경찰 등을 포함한 특정 급여근로자

○ 의무개인계좌

- 당연적용 : 1982년 12월 31일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; 월 최저 임금 이상의 연 적용소득이 발생하는 전문서 서비스 송장 발행하는 특정 자영자
- 임의적용 :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와 법정 월 최저소득 미만의 연 적용소득 자영자
- 자영자의 연 적용소득은 이전 총소득의 80%에 해당
 - ※ 법정 월 최저임금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 301,000 pesos(2019년 3월 기준); 18세 미만이나 65세 초과 가입자는 224,704 pesos(2019년 3월 기준)

○ 사회부조 및 보편적 아동급여 : 칠레 거주자

4 재원조달

○ 가입자

- 사회보험
 - 임금소득자는 적용소득의 18.84%. 급여근로자의 경우 직업에 따라 적용소득의 20~30% 납부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은 60 UFs. 전년도 실질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
 - ※ UF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일 조정되는 지수를 지칭하며 1UF는 27,908.86 pesos(2019년 7월 1일 기준)
- 의무개인계좌
 - 연간 가입신고소득의 10%(노령)에 평균 1.25% (관리운영비)를 합산함
 - 고위험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 직종에 따라 월 적용임금의 1% 또는 2% 추가 합산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임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은 79.2 UFs. 전년도 실질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
 - ※ 법정 월 최저임금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 301,000 pesos(2019년 3월 기준); 18세 미만이나 65세 초과 가입자는 224,704 pesos(2019년 3월 기준)
 - ※ UF는 소비자 월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일 조정되는 지수를 지칭하며 1UF는 27,908.86 pesos(2019년 7월 1일 기준)
- 사회부조 및 보편적 아동급여 : 해당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
 - 가입신고소득의 18.84%
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임
- ※ 법정 월 최저임금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 301,000 pesos(2019년 3월 기준); 18세 미만이나 65세 초과 가입자는 224,704 pesos(2019년 3월 기준)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은 60 UFs
- ※ Uf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일 조정되는 지수를 지칭하며 1Uf는 27,908.86 pesos (2019년 7월 1일)
- 의무개인계좌
 - 적용소득의 3.04% (2028년까지 10% 증가) (노령 및 행정관리비)에 1.53% (장애 및 유족)를 합산함
 - 자영자의 연 적용 소득은 이전년도 총 소득의 80%에 해당함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임
 - ※ 법정 월 최저임금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 301,000 pesos(2019년 3월 기준); 18세 미만이나 65세 초과 가입자는 224,704 pesos(2019년 3월 기준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은 878.4 UFs
 - ※ Uf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일 조정되는 지수를 지칭하며 1Uf는 27,908.86 pesos (2019년 7월 1일)
- 사회부조 및 보편적 아동급여 :해당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 : 해당 없음
- 의무개인계좌
 - 지불 임금총액의 1.53% (장애 및 유족), 고위험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업종에 따라 가입 임금총액의 1% 또는 2% (노령) 추가납부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은 79.2 UFs. 전년도 실질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
 - ※ Uf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일 조정되는 지수를 지칭하며 1Uf는 27,908.86 pesos임(2019년 7월 1일)
- 사회부조 및 보편적 아동급여 : 해당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획득된 수급권을 위한 모든 비용
- 의무개인계좌
 - 최저보장노령 및 장애연금, 노령연대보충급여(PSV), 장애연대보충급여(PSI)에 대한 총 비용; 청년 근로자를 위해 보험료 납부 최초 24개월 동안 보험료 지원 (월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에 대해 월 보험료의 50%를 지원함)
- 사회부조 및 보편적 아동급여 : 총 비용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임금소득자의 경우 납부 기간이 1,040주, 또는 가입 적용 이후 주 수 50% 이상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 기간인 800주인 남성 65세 도달자, 여성의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이 520주 이상인 60세 도달자; 급여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인 65세(여성 60세) 도달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.020 주 이상인 가입자의 정상퇴직연령은 고위험 직종에서 근무한 때 5년마다 직업에 따라 1년(광산 또는 제련업 종사자는 2년)씩 감소하여 최대 5년(광산 또는 제련업 종사자는 10년)까지 감소 가능
 - 임금소득자의 경우 소득 활동 지속 가능하나, 급여근로자는 모든 소득활동을 중단해야 함
 - 급여근로여성 아동수당 :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; 미망인의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요건 해당 없음
 - 사회보험 노령연금 해외수급 가능
- 노령연금(의무개인계좌)
 - 65세(남성) 혹은 60세(여성) 도달자.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의 정상 퇴직연령은 고위험 직종에서 근무한 때 5년마다 직업에 따라 2년 또는 1년씩 감소하여 최대 10년까지 감소 가능
 - 조기연금 :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계좌 잔액이 가입자의 최종 10년간 평균 가입임금의 70% 그리고 PMAS의 80%를 연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충분한 경우 (PMAS는 노령연대보충급여조건 충족 이전의 최저 노령연금액으로 월 325,646pesos)
 - 인식채권 : 구 사회보험제도에서 의무개인계좌로 이행한 65세(남성) 혹은 60세(여성) 도달자. 1975년 11월부터 1980년 9월까지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이거나, 1979년 7월 1일 이후 의무개인계좌제도 가입일까지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
 - 최저보장노령연금 : 연금·수입·과세소득 합산액이 월 최저노령연금보다 적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65세(남성) 혹은 60세(여성) 도달자.
 - ※ 월 최저노령연금액은 70세 미만의 경우 138,585.79 pesos, 70세~75세 151,532.91 pesos, 76세 이상은 161,680.50 pesos
 - ※ 최저보장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 중이며 2023년까지 노령연대보충급여로 대체될 예정임.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최저보장연금을 수급한 자와 2008년 7월 1일 기준 50세 이상인 자는 2023년까지 최저보장연금과 노령연대보충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함
 - 개인계좌 노령연금 해외수급 가능
- 노령연금(사회부조)
 - 노령연대보충급여(자산조사) : 최종 5년 중 4년 이상을 포함하여 20세부터 20년 이상 칠레에서 거주중인 65세 도달자 기본연금(개인계좌 또는 사회보험노령연금에 산재유족연금 가산) 가입자로서 연금액이 월PMAS (PMAS는 노령연대보충급여 수급 전의 최저 노령연금액으로 월 325,646pesos) 보다 적은 경우. 수급자 가구의 경우 인구 총 조사결과 전체 인구 중 소득

하위 60%에 포함되어야 함

- 사회보장목표점수 (the Social Security Targeting Score)는 가구구성, 필요, 소득 관련 정보로 구성되며 이는 사회개발부(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), 국세청(the Internal Revenue Service), 연금 감독부(the Superintendence of Pensions)가 제공

- 노령연대연금(자산조사) : 65세; 최종 5년 중 4년 이상을 포함하여 20세부터 20년 이상 칠레에서 거주 중인 자; 기타 연금의 보험료 납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

※ 자산조사 : 수급자 가구의 경우 사회보장목표점수 (the Social Security Targeting Score)를 통한 조사 결과 전체 인구 중 소득 하위 60%에 포함되어야 함

• 아동급여(보편적) : 평생 1명 이상의 아이를 출생하거나 입양하고 노령연대연금·연대보충급여 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여성; 또는 최종 5년 중 4년 이상을 포함하여 20세부터 20년 이상 칠레에서 거주 중인 65세 이상 2009년 7월 1일 이후 퇴직자로 연기금운용사 (AFP)와 관련 있는 자

- 통계보조금(소득조사) : 월 노령연금액이 76세 이상 가입자를 위한 월 최저 노령 연금액 (161,680.50 pesos)보다 적은 경우 지급

- 금혼보조금(소득조사) : 가계소득이 소득 하위 4분위 이내로 결혼 50주년 부부에게 지급. 청구 전 5년 중 4년 이상 칠레에 거주하여야 하며, 50주년 기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

- 소득조사 : 부부 소득이 소득분위 하위 4분위 중 하나에 속해야함

○ 장애급여

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임금소득자의 경우 장애발생 시 65세(남성) 혹은 60세(여성) 미만이며, 완전(소득능력 70% 이상 상실) 또는 부분 장애(소득능력 30~69% 상실) 판정을 받아야 함. 최종 5년 중 40%와 가입적용 이후 주 수 50%를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이 50주 이상인 자(400주 이상 적용자는 마지막 요건 해당 없음)

- 65세(여성 60세) 미만의 급여근로자는 66.7% 이상 장애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

※ 예방 및 장애의료위원회는 임금소득자 및 급여근로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함

- 급여근로여성 아동수당 : 피부양 자녀위해 지급

- 사회보험장애연금 해외 수급 가능

• 장애연금(의무개인계좌)

- 소득능력 66% 이상 상실(원인이 업무관련 사고가 아니어야 함)한 것으로 판정받은 정상적 정년 미만인 자. 고용 최종 년도에 6개월간 보험료 납부한 경우 고용 종료 후 12개월까지 가입기간 연장됨(임의가입자 및 자영자도 반드시 장애 발생 직전 월 납부이력이 있어야 함)

- 부분장애연금 : 소득능력 50~65% 이상 상실(원인이 업무관련 사고가 아니어야 함)한 것으로 판정받은 정상적 정년 미만인 자. 최종 고용년도에 6개월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 고용 종료 후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연장됨(임의가입자 및 자영자도 반드시 장애 발생 직전 월 납부이력이 있어야 함)

※ 지역의료위원회가 장애 정도를 평가함

- 최저보장장애연금 :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최저보장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한 자, 또는 AFP에 가입한 50세 이상 도달자
- ※ 월 최저장애연금은 70세 미만의 경우 138,585.79 pesos; 70~75세의 경우 151,532.91; 76세 이상의 경우 161,680.50 pesos
- ※ 최저보장장애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중이며 2023년까지 장애연대보충급여로 대체될 예정임.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최저보장연금을 수급한 자와 2008년 7월 1일 기준 50세 이상인 자는 2023년까지 최저보장연금과 장애연대보충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함
- 개인계좌장애연금 해외 수급가능
- 장애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노령연대보충급여(자산조사) : 최종 6년 중 5년 이상 칠레에서 거주 중이며 장애판정을 받은 18세~64세인 자. 장애연대연금액보다 적은 기본연금(개인계좌 또는 사회보험장애 연금에 기타 유족연금)을 보유한 자. 수급자 가구의 경우 사회보장목표점수(the Social Security Targeting Score)를 통한 조사 결과 전체 인구 중 소득 하위 60%에 포함되어야 함
 - ※ 장애연대연금은 월 110,201 pesos
 - ※ 사회보장목표점수는 가구구성, 필요, 소득 관련 정보로 구성되며 이는 사회개발부, 국세청, 연금감독청이 제공
 - 장애연대연금 (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최종 6년 중 5년 이상 칠레에서 거주한 장애판정을 받은 18세~64세 도달자로 기타 다른 연금에 대한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. 수급자 가구의 경우 사회보장목표점수를 통한 조사 결과 전체 인구 중 소득 하위 60%에 포함되어야 함
 - ※ 사회보장목표점수는 가구구성, 필요, 소득 관련 정보로 구성되며 이는 사회개발부, 국세청, 연금감독청이 제공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한 임금소득자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400주 이상인 경우; 또는 최종 5년 중 40% 이상 및 가입적용 이후 주 수의 50%를 포함하여 5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(여성의 경우 마지막 요건 적용 제외)
 - 급여근로자인 가입자는 3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
 - 수급가능 유족 : 가입자와의 혼인기간이 6개월 이상(가입자가 수급자였을 경우 3년 이상)인 미망인(홀아비), 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미망인(홀아비), 또는 사망 당시 사망자의 자녀를 임신한 미망인; 사망자의 혼외자녀 모친; 18세 미만 자녀(학생인 경우 24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; 기타 수급가능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부모
 - ※ 미망인(홀아비)의 연금은 재혼과 동시에 지급중단
 - 재혼일시금 : 55세 미만 미망인
 - 해외 수급 가능
- 유족연금(의무개인계좌)
 - 사망자가 개인계좌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
 - 수급가능 유족 : 가입자와의 혼인기간이 6개월 이상(가입자가 수급자였을 경우 3년 이상)인 미망인(홀아비), 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미망인(홀아비), 또는 사망 당시 사망자의

- 아이를 임신한 미망인; 사망자의 혼외자녀 모친; 18세 미만 자녀(학생인 경우 24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; 기타 수급가능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부모
- 장제비 (사회보험 및 사회부조) : 가입자의 장례비를 지불한 자에게 지급
-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해외수급 가능
- 장제비 (의무개인계좌) : 가입 근로자 또는 수급자의 장례비를 지불한 자에게 지급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임금근로자의 경우, 가입자 기본급의 50%에 50주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50주당 기본급의 1%씩 가산한 금액 지급; 급여근로자의 경우, 가입자 기본급의 1/35에 보험료 납부연수를 곱한 금액 지급
 - ※ 가입자의 최종 5년간의 월 평균급여액으로 최초 2년은 임금 혹은 급여변동률에 따라 조정됨
 - 급여근로여성 아동수당 : 피부양 자녀 1인당 가입자 기본급의 1/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, 미망인의 경우 기본급의 2/35
 - 월 최저노령연금액 : 70세 미만인 경우 138,585.79 pesos; 70세~75세 151,532.91 pesos; 76세 이상인 경우 161,680.50 pesos
 - 급여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됨;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내 15% 이상 변동할 경우 조기 조정
- 노령연금(의무개인계좌)
 - 가입자는 다음의 4가지 선택권을 가짐: ① 즉시종신연금 ② 종신연기연금 및 임시소득 ③ 인출 ④ 인출 및 즉시종신연금
 - 인식채권 : 가입자가 정상적 퇴직연령에 도달한 이후, 1979년 7월 이전 가입자의 월 소득 12배에 4%의 연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개인계좌로 입금됨
 - 최저보장노령연금 : 가입자가 70세 미만인 경우 월 138,585.79 pesos, 70~75세 151,532.91 pesos, 76세 이상 161,680.50 pesos 지급
 - 급여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됨
- 노령연금(사회부조)
 - 노령연대보충급여(자산조사) : 기본연금(노령연금과 기타 유족연금액 합산)과 기본연대연금 간 차액을 지급
 - 기본연대연금(자산조사) : 월 110,201 pesos
 - 조정요율은 월 PMAS로 분할된 월 기본연대연금임(현 조정요율은 33.8%)
 - PMAS는 노령연대보충급여 요건에 부합하기 이전의 최저 노령연금액(현 PMAS는 325,646 pesos)
 - ※ 급여 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됨;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내 10% 이상 변동할 경우 조기 조정

- 노령연대연금 (자산조사) : 월 110,201 pesos
- ※ 급여 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됨;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내 10% 이상 변동할 경우 조기 조정
- 아동급여(보편적) :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 당 채권지급. 2009년 7월 1일 기준 상65세 미만인 여성의 경우 자녀 출산 또는 입양 당시 월 법정최저임금액 18배의 10에 응하는 금액이 65세 도달한 익월 내 개인계좌로 입금됨. 2009년 7월 1일 출생 또는 입양된 아이의 경우,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5세까지 기간 동안 채권이자가 발생
- ※ 채권이자는 채권 C의 연평균 수익률에서 동 기간 동안의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수준임
- ※ 월 법정최저임금은 18세~65세 가입자의 경우 301,000 pesos (2019년 3월); 18세 미만 66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224,704 pesos (2019년 3월)
- 통계보조금(자산조사) : 5월에 연 62,791 pesos 지급
- 금혼보조금(자산조사) : 321,474 pesos(배우자는 160,737 pesos) 일시금으로 지급
- ※ 급여 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됨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완전장애의 경우, 임금소득자에게는 기본임금의 50%에 500주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50주당 기본임금의 1%씩 가산한 금액 지급; 급여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70%에 20년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기본급의 2%씩 가산한 금액 지급
 - 부분장애의 경우 총 장애연금의 50% 지급
 - ※ 기본임금 또는 기본급은 최종 5년간의 월 평균 임금 또는 급여로 최초 2년은 임금 또는 급여 변동률에 따라 재평가됨
 - ※ 월 최저 장애연금액은 70세 미만인 경우 138,585.79 pesos, 70세~75세 151,532.91 pesos; 76세 이상인 경우 161,680.50 pesos
 - 급여근로여성 아동수당 : 피부양 자녀 1인당 가입자 기본급의 1/35(공무원인 경우 1/30)가 지급됨; 미망인의 경우 기본급의 2/35 (공무원인 경우 2/30)
 - 급여액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(소비자 물가지수가 연내 15% 이상 변동할 경우 조기 조정)
- 장애연금(의무개인계좌)
 - 완전장애인 경우 기본급의 70% 지급. 개인계좌 적립액으로 급여 재원 부담(잔액이 영구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 최소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보험에서 개인계좌 적립분을 보충함)
 - 일시부분장애급여 : 기본급의 50%를 최대 3년 동안 지급. 개인연금기금운용회사(AFP)가 가입자의 보험약관을 기초로 급여 지급. 가입자가 장애 및 유족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(1년 이상 개인계좌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) 개인계좌 기금은 급여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됨
 - ※ 기본급여는 최종 10년 간 가입자의 월평균 급여
 - 장기부분장애연금 : 3년 이후 2차 장애심사 및 판정 이후의 연금은 개인계좌 적립액으로 지급(잔액이 가입자 기본급의 50%에 상응하는 연금 지급을 위한 최소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보험에서 개인계좌의 부족분을 보충함)

- 최저보장장애연금 : 70세 미만인 경우 138,585.79 pesos, 70세~75세 151,532.91 pesos; 76세 이상인 경우 161,680.50 pesos 지급
- 급여 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됨
- 장애연금(사회부조)
 - 장애연대보충급여(자산조사) : 월 기본연금액(노령연금에 유족급여가 합산된 금액)과 월 장애연대연금의 차액이 지급됨
 - 장애연대연금 (자산조사) : 월 110,201 pesos
- ※ 급여액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(소비자 물가지수가 연내 10% 이상 변동할 경우 조기 조정)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의 기본임금 또는 급여의 60%와,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 중 큰 금액을 수급가능 자녀가 없는 55세 이상 미망인 또는 장애가 있는 홀아비에 지급; 수급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50% 지급; 사망자 혼외 자녀의 모친에게는 미망인 연금의 60% 지급
 - 기본급여 또는 임금은 급여 또는 임금 변동을 반영한 최초 2년을 포함한 최종 5년간의 사망자 평균 월 급여 또는 임금을 지칭함
 - 월 최저 배우자연금액(자녀有) : 70세 미만 75,226.83 pesos; 70세 이상 96,899.69 pesos
 - 월 최저 배우자연금액(자녀無) : 70세 미만 89,993.16 pesos; 70세 이상 112,214.13 pesos
 - 55세 미만 미망인의 경우 2년분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수급
 - 고아연금 : 기본급여 또는 임금(최종 5년 간 가입자의 월 평균 급여 또는 임금)의 20% 혹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 중 큰 금액을 각 자격 있는 고아에게 지급
 - 월 최저 고아연금은 20,787.87 pesos
 - 급여액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(소비자 물가지수가 연내 15% 이상 변동할 경우 조기 조정)
- 유족연금(의무개인계좌)
 - 배우자연금 : 수급가능 자녀가 없는 미망인(홀아비)에게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었던 개인계좌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60% 지급; 수급가능 자녀가 있는 미망인(홀아비)에게는 50% 지급; 사망자 혼외자녀의 모친 또는 부친에게는 36% 지급 (사망자와 배우자가 동시에 수급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30% 지급)
 - 월 최저 배우자연금액(자녀有) : 70세 미만 69,292.91 pesos
70세~75세 75,766.45 pesos
76세 이상 80,840.25 pesos
 - 월 최저 배우자연금액(자녀無) : 70세 미만 83,151.47 pesos
70세~75세 90,919.74 pesos
76세 이상 97,008.31 pesos
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개인계좌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5%를 18세 미만(학생·미혼인 경우 24세;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) 각 고아에게 지급;

- 각 25세 이상 부분장애 고아에게 11% 지급
 - 월 최저 고아연금액 : 20,787.87 pesos
- 기타 수급가능 유족 : 상기 수급가능 유족이 없고 부모가 가족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,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개인계좌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를 부모에 지급
- ※ 사망자가 개인계좌에 보험료를 적극 납부한 경우, 최종 10년 간 사망자의 월 평균 소득의 70%에 상응하는 기준연금에 따라 산정됨
- ※ 가입자의 사망 또는 임시 부분장애급여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연금은 사망자의 개인계좌 잔액으로 지급됨; 사망자가 연금 수급자이었던 경우 급여 유형은 사망자가 선택했던 퇴직연금 유형으로 지급함(사망자의 개인계좌의 잔액이 유족연금 재원을 위한 최소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명보험에서 부족금액을 보충함)
- ※ 유족연금액 상한선 없음
- ※ 급여액은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됨
- 장제비(사회보험 및 사회부조) : 월 비보상 최저임금의 3배까지 일시금으로 지급
 - 월 비보상 최저임금은 194,164.00 pesos (2019년 3월)
- 장제비 : (가입자가 생명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개인계좌 혹은 민간보험사에서)장례비용을 지불한 친척에게 15UF 일시금 지급
 - UF는 월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일 조정되는 지수를 지칭하며 1UF는 27,908.86 pesos임

7

관리운영기관

○ 의무개인계좌

- 노동사회보장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)
 - 연금감독청(Superintendent of Pensions)을 통한 전반적인 감독
 - www.spensiones.cl
- 개인연금기금운용회사(AFPs)
 - 개인계좌 관리 및 보험료 징수

○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

- 사회보장청(Social Security Institute)
 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 관리

<2019년 ISSA 자료>